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원중 의원 외 31명

나. 의안번호 : 제2567호

다. 제출일자 : 2025. 3. 31.

라. 회부일자 : 2025. 4. 2.

2. 제안사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운송 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제명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5. ~ 4. 9.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1) 물류정책과-5565(2025.4.11.) “제33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의견제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 시행)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이 기존 ‘용달·개별·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개인·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 2019. 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신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 현 행 >

톤수 \ 대수	1대	2대 이상
1톤 이하	①용달화물업	
1톤초과~5톤미만	②개별화물업	③일반화물업
5톤 이상		

용달, 개별, 일반

< 개 편 >

1대	20대 이상
개 인	일 반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명변경은 2019년 7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종류가 ‘개별·용달·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임
- 안 제2조는 2019년 관련 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²⁾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구분기준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 다만, 서울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2019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까지 동 조례 규정을 변경하지 않아 시민 혼란 발생과 관련 정책 집행시 혼란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 법령 위임 조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